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석  
 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 
 전화 75-7834  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 전화 75-6090

제 439 호  
 1974. 4. 1.

# 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826 호 :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 ..... 3

◎ 고 시

제 34 호 : 하천점용 ( 급수관매 관 ) 허가 ..... 4

◎ 공 고

제 57 호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변경  
 지정공고 ..... 4

제 60 호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..... 5

제 61 호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..... 5

제 62 호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..... 6

◎ 사 영 ..... 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금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

1974. 4. 1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○ 서울특별시 조례 제 826 호

서울특별시금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금수조례중 다음과같이  
개정한다.

제 12 조를 다음과같이 한다.

제 12 조 (시공업허가) ①시공업자가 되  
고자 하는자는 시장으로부터 상수  
도시공업업 (이하 "시공업"이라한다)  
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 
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  
자격검정시험 (이하 "검정시험"이라한  
다)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사이어  
야 한다. 다만 자격증 소지가 2인  
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
지 아니하다.

③시장은 검정시험을 년 1회 실시  
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시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 
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시공업허가 및 검정시험 기타  
시공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 
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시장은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상  
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시공업  
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  
수로를 징수한다.

1.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,000원
2.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 격증 교부  
수수료 1건당 500원
3. 시공업허가증 교부수수료 (전규)  
1건당 1,000원  
시공업허가증 교부수수료 (정선)  
1건당 500원

제 46 조를 제 47 조로 하고 제 45 조  
다음에 제 46 조를 다음과 같이 삽  
입한다.

제 46 조 (권한위위임) 이 조례의 기  
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일부를  
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고 시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 호

하천정용 (급수관 배관) 허가

하천정용 (급수관 배관) 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하천법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고시한다.

1974. 4. 1

서울특별시

1. 허가년월일 : 1974년 4월 1일
2. 허가위치 : 서울특별시 방학동 7-도봉동 1간 (중량천)

3. 정용목적 : 급수관 배설

4. 정용면적 : 580 평

5. 공사외종류 및 수량 : 급수관  
\$ 500 % 연장 3,200 m

6. 정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6개월

7. 공사의 착수, 준공예정 년월일  
착 수 :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
준 공 :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

8. 수허가자 주소성명

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

서울 미완주식회사 대표이사

이 유

## 공 고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57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 변경 지정 공고

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지

정사양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4. 3. .

서울특별시

## 1. 변경 지정

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
465	신한삼유공업 주식회사	최길하	성동구농동 451-1096	세타	465	신한삼유공업 주식회사	최길하	성동구농동 451-282	세타

㉔ 서울특별시공고제 60 호
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4 호 ( 73.5.6 ) 로 실시계획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제 85 조제 1 항 및 동법제 46 조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 73.4.4 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 은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4. 1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집행지: 시내서대문구갈현동사 123-1 의 4 필
2. 사업명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
3. 준공면적: 10,281 평
4. 사업시행자: 시내서대문구갈현동 6-6 정연택
5. 사업기간: 착공: 73. 5. 9.  
준공예정일: 74. 3.31.
6. 준공도면: 별첨 인승도면

㉕ 서울특별시공고제 61 호
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 호 ( 71.2.8 ) 로 실시계획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제 85 조제 1 항 및 동법제 46 조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( 73.4.4 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4. 2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집행지: 시내관악구신탐동산 3
2. 사업명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
3. 준공면적: 22,274 평
4. 사업시행자: 관악구복석동산 61 율용진의 1인
5. 사업기간: 착공: 71. 2.10.  
준공예정: 71.12. .
6. 준공도면: 준공인승도면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호

일단의주택지구성사업(토공)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68 호 ( 72.6.30 ) 로 실시계획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구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동법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 73.4.4 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아게 한다.

1973. 4. 2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집행처 : 시덕서대문구흥계동산 33-3 의 10 필

2. 사업명 : 일단의주택지구성사업

3. 준공면적 : 6,950 평

4. 사업시행자 : 태진건설주식회사  
대표 윤학동

5. 사업기간 : 착공 : 72. 6. 15.

준공예정 : 73.12.20

6. 준공도면 : 별첨인증도면

사 명

◎1974. 3. 21.

세정과 지방행정국 강동식  
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호  
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 
명함 ( 74.3.21-74.6.20 )

산업국장 부이사관 이상복  
이사관에 임함.  
1 호봉을 감함.

1974 년 4 월 1 일

대 통 령

◎1974. 4. 1.

경상북도 지방행정국 오병욱  
보사관 주사보  
서울특별시건설을 명함.  
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.  
2 호봉을 감함.  
총무과근무를 명함.

전라남도 지방행정 도입준비위원회	정운철	군과공보실파선	근무를 명함.	
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.		송 구	지방행정 서기	차 덕 호
지방행정서기에 임함.		서대문구	근무를 명함.	
7호봉을 급함.		송 구	지방행정 서기	이 천 수
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	관악구	근무를 명함.	
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	변영일	송 구	지방행정 서기	이 계 형
공업과 파견 근무를 명함.		용산구	근무를 명함.	
용산구 지방행정 주도사업소 주	신상욱	송 구	지방행정 서기	김 남 제
공업과 파견 근무를 명함.		마포구	근무를 명함.	
영동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	김상용	송 구	지방행정 서기	손 광 국
		성북구	근무를 명함.	

서 울 특 별 시 장